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페이지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담당관	1

(2012. 11. 28)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명 금 길]

1. 안 건 명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2년 11월 16일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가. 2012년 11월 22일

나. 의안번호 : 12-93

4. 관련근거

가. 「공직자윤리법」 (법률 제10982호, 2011.7.29일부개정, 2011.10.30 시행)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발생하여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

< 주요내용 >

- (1) 안 제3조제1항제4호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업무 취급을 승인하도록 하여 기능을 확대함.
- (2) 안 제3조제1항제3호에서는 제3조제1항제1호에 명시된 위원회 기능과 내용이 중복되어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
- (3) 안 제3조의2에서는 ‘위원회는 심사 결정을 위한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기준 근거 조항을 신설함.
- (4) 안 제8조 및 제7조제2항에서는 수당 등 지급 대상을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정하고, 위원회의 사무직원을 ‘공직윤리업무 담당 직원’으로 명확히 규정함.

< 검토의견 >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이 (법률 제10982호)로 2011. 7. 29 일부개정되어 2011. 10. 30일 시행되고, 이와 관련하여 2011. 9. 23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표준조례안을 통보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절차상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